국선변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O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지급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회계관계공무원이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지급 지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보수 지급기한의 기산점인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송부받은 해당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함(안 제17조 제2항)
- 회계관계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등을 입금하도록 함 (안 제17조 제3항)
- 회계관계공무원이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수 등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7조 제4항)

3.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 •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국선변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개정예규안

국선변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회계관계공무원은"을 "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(송부)받은 "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" 원본에 접수 인을 날인하고,"로 하고, "입력하고"를 "입력하며"로 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"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"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.

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, 국선변호인의 성명, 판결선고일 및 지급 의뢰일,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수 등의 지급)	제17조(보수 등의 지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	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
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기초로	따라 교부(송부)받은 "국선변
재판사무시스템에 지급일을 <u>입</u>	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
력하고, 출력한 "국선변호료	록"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
지급 입금의뢰 명세서"에 기	<u>고,</u> ,
재된 국선변호인의 은행거래계	
좌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보	
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	입력하며,
입금한다.	
<u>〈신 설〉</u>	③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
	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	제1항에 따라 "국선변호인 명
	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" 원
	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	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
	<u>상금을 입금한다.</u>
<u>〈신 설〉</u>	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
	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

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, 국선변호인의 성명,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81